

Policy and Law Report _Vol.130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04.04.~ 2022.04.10) -

April 11,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기획재정부	• '국산 소프트웨어 활성화'정책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국산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함. 이번 간담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현황과 국산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함 * ① 정부:기획재정부 제2차관, 정보통신예산과장,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 ② 공공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③ 협회: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 한국정보기술서비스산업협회 ④ 민간:민간기업, 목포대 법학 김도승 교수 등 특히, 지난 '20년에 도입되었으나 아직까지 추진사례가 없어 기업에게 생소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함 * '20.12월 「소프트웨어진흥법」을 개정하여 신설한 제도로,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는 공공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 또한, 지자체의 공공분야 시스템에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한 사례인 '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의 구축 경험과 현재 준비중인 '어린이 급식관리시스템' 추진 과정에서의 기업의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함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 도입 전인 '04년부터 추진 (現 티머니)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면제 - 원칙적으로 국비 300억원 이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정보시스템 구축에 앞서 외부 환경분석과 내부 현황분석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그에 맞는 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 -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 이상의 상세한 사업 계획서를 수립하므로, 유사절차의 중복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면제 예정 * '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세부지침」 개정 ('22.5월) ②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 과기정통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사업 타당성, 규모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임 * 금년중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개정 - 전문기관은 사업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조사를 통해 민간투자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	2022-04-06

부처	내용	일시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가이드라인」 배포 -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면제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절차·기준, 사업유형, 서식 등을 안내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가이드라인」을 배포('22.5월)할 계획임	
과학 기술정보 통신부	•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전문기업 육성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국내 메타버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망콘텐츠 개발, 해외 진출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메타버스 전문기업으로 본격 육성한다고 밝힘 '메타버스 전문기업 육성사업'은 '융합형콘텐츠 개발지원사업(60억원 규모)'과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사업(119억원 규모)'으로 구성되어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① (융합형콘텐츠 개발지원사업) 가상융합기술(XR)을 포함한 메타버스가 다양한 분야에 융합·확대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산업·기술 융합형 메타버스 선도콘텐츠 제작·사업화 지원, 메타버스 전문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 - 원칙적으로 국비 300억원 이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정보시스템 구축에 앞서 외부 환경분석과 내부 현황분석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그에 맞는 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 -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 이상의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므로, 유사절차의 중복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면제 예정 ②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사업)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성장단계에 따라 초기진입, 중기도약, 선도전문으로 구분하고, 기업 수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원기업 대상으로 기술개발, 인력매칭, 투자유치 등 상시 컨설팅과 함께 메타버스 홍보관을 통해 해외 투자자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특히 ▲ '초기진입기업'에는 초기 투자금 확보를 위한 클라우드 펀딩과 콘텐츠 시장성 검증 프로그램 ▲ '중기도약기업'에는 해외 수요처 발굴·매칭과 비즈니스 기회 ▲ '선도전문기업'에는 국내 플랫폼기업과 해외 콘텐츠기업의 공동 협력 사업비용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임	2022-04-07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 자원부	•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협의회」 출범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협력관 주재로 6대 분야별*로 으뜸기업에 선정된 업체대표 및 으뜸기업 지원기관**과 함께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함 * 6대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기계금속, 전기전자, 자동차, 기초화학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R&D),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글로벌 진출),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애로 해소) 금번 출범식은 으뜸기업 선정에 따른 기업별 건의사항 등의 소통창구 및 소부장 으뜸기업 간 기술교류·자문·협력 등 소부장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유의 장 형성을 위해 개최함 협의회는 43개 으뜸기업 전체를 회원으로 하며, 소부장 6대 분야별 대표로 구성된 지원협의회를 반기별 1회 개최하여 기술교류, 협력사업, 기술사업화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정책제안을 할 예정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구체적으로는 기술개발을 위한 정보공유·기술협력·공동투자 등 협업 및 수요 연계를 통한 기술 사업화 추진 ② 각종 규제에 의한 사업화 애로요인을 기업간 정보 공유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에 정책제안을 하여 산업계 의견 반영 ③ 우수 소부장 으뜸기업 포상 추천 등 우수기업 발굴과 홍보 추진 ④ 지원협의회 역할에 기업대상 자문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과 으뜸기업간 소통 및 안건 구체화 등의 실무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가 보조 등이 있음	2022-04-05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 자원부	• 14대 뿌리업계와 발전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래 뿌리산업 방향을 모색함 * 뿌리산업법 개정('21.12월)으로 뿌리산업 범위 확대 <table border="1"> <tr> <td>기존</td><td>기 반 공정(6)</td><td>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td></tr> <tr> <td rowspan="2">확대</td><td>다원화 공정(4)</td><td>사출 · 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 지류 공정</td></tr> <tr> <td>지능화 공정(4)</td><td>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SW, 엔지니어링 설계</td></tr> </table> 지난해 뿌리산업을 14대 분야로 확장한 이유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그린 전환 등 제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었으며, 금년에는 이를 모멘텀으로 삼아 뿌리산업의 미래형 첨단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뿌리산업의 첨단 산업화를 위한 3대 정책방향으로는 ① (융·복합화) 14대 뿌리기술 융·복합화를 통해 전기차, 친환경 선박, 수소산업 등 미래 신 시장에서 뿌리산업 공정혁신 ② (디지털화) 생산 효율성과 품질 개선을 넘어,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뿌리 공정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③ (경쟁력 강화) 우수한 인재들이 뿌리산업 분야에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숙련인력 양성과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경영역량 증대	기존	기 반 공정(6)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확대	다원화 공정(4)	사출 · 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 지류 공정	지능화 공정(4)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SW, 엔지니어링 설계	2022-04-06
기존	기 반 공정(6)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확대	다원화 공정(4)	사출 · 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 지류 공정								
	지능화 공정(4)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SW, 엔지니어링 설계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환경부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2.4.7. 시행)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들어 있는 납의 함량기준을 0.06퍼센트 이하에서 0.009퍼센트 이하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875호, 2021.7.6. 공포, 2022.4.7. 시행)됨 이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 등 관련 서식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제한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하는 경우 통지해야 하는 개선명령서의 서식을 마련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합성수지 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을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에도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2022-04-07
여성가족부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2022.4.5.시행) 인터넷게임물 이용에 대한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야시간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상담·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심야시간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인터넷게임물 피해에 대한 지원 사업의 내용과 지원 대상을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하려는 것임 (제21조 및 제22조 삭제 등)	2022-04-05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환경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6호, 2020.6.9. 공포, 2022.6.10.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업무의 권한을 위임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안 제48조제1항제2호) - 전국에 산재한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자체로 권한 위임 필요 ※ 의견 제시기간 : 4/5(화)~5/16(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자원재활용과)로 제출	2022-04-05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장려금 제도의 신청기간, 지원업종·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22년 7월부터 노무제공자 5개 직종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농지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관련 근거 마련 (안 제17조제2항 등) - 그간에는 고시 등으로 규정하고 있던 고용장려금 제도의 신청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명시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어 이를 시행령·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 ② 고용장려금의 지원업종 선정 근거 마련 (안 제19조제6항 등) - 고용장려금사업 중 지원요건만 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업종을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고용유지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예) 공공성이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은 제외	2022-04-05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고용 노동부	③ 특고 고용보험 적용 직종 추가 (안 제104조의11제1항 각 목) - '22.7월부터 노무제공자 5개 업종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22.3.4) *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운반기사),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④ 타 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화 (안 제142조의2제3호라목 등)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라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의 근거규정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된 사항을 현행화 ※ 의견 제시기간 : 4/5(화)~5/16(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로 제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의 건설도급 특례와 관련하여 원수급인의 제출서류에 하수급인의 등록증 등을 추가하고,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기간을 명확히 하며,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제외 대상에서 4촌 이내 혈족을 직계존비속으로 축소하는 등 지원제외 범위를 조정하며, 불필요한 일용 근로자 이직확인서 서식을 삭제하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명확히 하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조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원수급인의 하수급인 신고시 제출서류에 하수급인 사업자등록증 포함 (안 제4조제1항) - 건설도급 원수급인이 6개 업종*에 해당하는 하수급인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 하수급인의 업종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포함 * 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 각호) ②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관련 근거 마련 (안 제41조제2항 등) -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022-04-05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③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외 근로자 등 정비 (안 제41조의2제1항, 제44조제3항)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제외 범위에서 4촌이내 혈족·인척을 직계존·비속으로 조정 -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제외 범위에서 비상근 촉탁근로자 삭제 ④ 일용근로자용 이직확인서 서식 삭제에 따른 정비 (안 제82조의2 및 별지 제75호의5 서식) - 별지 제7호서식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별지 제75호의5 서식 일용근로자 이직확인서 삭제 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별도 규정 (안 제101조제3항 및 제4항, 별표 2의2, 2의3 신설) - 그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근로자에 해당하는 별표 2를 준용하던 것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별도 규정토록 개선 ⑥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현행화 (안 제25조제1항) - 「근로기준법」제2조 개정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서 인용한 '소정근로시간' 근거규정이 제2조제8호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 의견 제시기간 : 4/5(화)~5/16(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로 제출	
식품 의약품 안전처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외 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나,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경우로 현장조사가 어려운 경우나 효율적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지정을 신청 받은 경우에 해당 기관이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ISO 17025 인정 유지를 위한 현장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현장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지정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행정처분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외 시험·검사기관 지정·재지정 평가 시 감염병 발생 등으로 현장 조사가 어려울 경우 비대면 조사로 개선 (안 제7조제3항) ② 국외 시험·검사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외 시험·검사기관 재지정 절차 개선 (안 제8조의3제3항) - ISO 17025 인정을 받은 경우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받은 현장조사 결과로 현장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	2022-04-0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③ 위반횟수의 기산점을 “처분한 날”로 명확히 규정하고, 누적회차 적용차수 기준 마련 (안 [별표 5] 1. 일반기준) – 누적회차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차수로 적용 (권익위 95호 의결) ④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병과하는 중복 제재규정 개선 (안 [별표 5] 2. 세부기준) ⑤ 필요규제사항에 대한 규제일몰 해제 (안 제28조) – 필요규제사항 2건(제10조 행정처분기준, 제20조 시험검사능력평가)을 규제 재검토 대상(규제일몰)에서 제외 (국조실 일몰TF 일몰규제 심사) ※ 의견 제시기간 : 4/8(금)~5/18(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시험검사정책과)로 제출	
특허청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그간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을 산업재산권 정보화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해왔으나, 산업재산권 정보화 전문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한국 특허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816호, 2022.2.3. 공포, 8.4. 시행)됨에 따라, 한국특허정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 등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특허공제사업 수탁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제도 폐지에 따른 시행령 정비 및 한국특허정보원의 수익사업 범위 규정 등 (안 제8조의3 등) –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지정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지정 요건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개정법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의 수익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수익사업을 시작하거나 중단할 경우 미리 특허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한국특허정보원이 아닌 자가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칭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러한 위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	2022-04-06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② 특허공제사업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수탁기관 지정 및 재지정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28조의5 신설) - 발명진흥법 시행령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19.4월) 결과, 특허공제사업 수탁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및 재지정 요건 등이 모호하여 제도개선이 권고되었음 - 권익위 권고에 따라, 모호하게 규정된 수탁기관 지정 및 재지정 취소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③ 과잉행정 방지를 위해 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 기준 구체화 (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나목의 단서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국민권익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95호, 2021.2.22. 의결)에 따라, 행정제재 가중처분 시 누적회차 적용 기준 마련이 권고되었음 - 이에 따라, 발명진흥법 시행령 별표11 제1호나목의 단서를 신설하여 가중처분 적용 여부에 대해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 의견 제시기간 : 4/6(수)~5/16(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로 제출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 등 10인)」 지난해 유튜브, SNS상에서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 협찬 및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상품을 추천하거나 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 광고를 하는 뒷광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소비자 기만과 오인 등의 피해가 발생함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현실세계와 유사한 가상공간에서의 사회·문화·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 사용이 급증하면서 특정 브랜드의 상품이나 상표가 가상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의 형태로 노출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광고에 대한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 유명인이 추천·보증하거나 가상 공간에 노출되는 상품이나 상표가 광고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사업자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정하고 인터넷, SNS, 유튜브 등을 통해 상품 등을 추천·보증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상품 등 또는 상표를 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소비자 및 메타버스 플랫폼의 다른 사용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안 제2조, 제3조의2 및 제20조)	2022-04-01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의원 등 13인)」 디지털 경제 가속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상 광고도 구매 및 검색 이력, 웹사이트 방문 이력,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사용 이력 등 소비자의 온라인상 활동 정보를 수집하여 소비자 개인의 관심, 기호, 성향 등에 맞는 광고 즉 온라인 맞춤형 광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는 이를 일반 광고와 구분하기 어려워 개인 정보가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고, 소비 과정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사업자들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광고가 맞춤형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하며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 및 소비주체로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5조의2 신설 및 제20조제2항)	2022-04-0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만으로는 신산업의 등장, 기존 거래관행의 답습 등으로 증가하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어 소비자를 비롯한 고객의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시·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 불공정약관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자 함 (안 제17조의2 및 제20조)	2022-04-05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의원 등 11인)」 최근 물품의 부품보유기간이 경과되어 사업자가 해당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부품을 교환하지 못하는 등 소비자의 수리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는 사업자가 물품별 부품보유기간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아니하여 소비자가 부품보유기간을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물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함에 있어 부품보유기간에 관한 표시기준도 정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해당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4호)	2022-04-0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u>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의원 등 10인)</u>」 최근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의 인상이 지속되어 원재료를 가공하여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경영 악화가 심각한 수준임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현실적인 관계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대부분 중소기업이 떠안으면서 납품대금에 원자재 가격의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는데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고 이 또한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원자재의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른 인건비의 변화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의 분위기를 정착시키고자 함 (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2022-04-01
보건복지 위원회	• 「<u>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u>」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질병 관리의 패러다임이 ‘치료’ 중심의 사후적 관리에서 일상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예방’으로 전환되면서 그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으며, 디지털 첨단기술(빅데이터, AI인공지능 등)과의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4차 산업 핵심 분야임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제조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운영·관리하는 규제 법률로 4차 산업의 핵심인 지식집약적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 및 근거가 전무함 최근, 바이오헬스산업을 미래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 분야에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포함하여,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정부차원에서 R&D 투자를 비롯하여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2022-04-05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건강기능식품산업을 4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한 지 20여 년이 경과함에 따라 새로운 식품환경에 맞추어 기능성 인정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기능성식품의 수출 촉진 등을 위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규정 등을 반영하는 등 기능성식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의 기능성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명을 「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안 제명) ②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기능성의 정의를 반영하여 기능성의 정의에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을 감소”하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기능성의 의미를 명확히 함 (안 제3조제1호) ③ “기능성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으로 구분하고, 기능성표시식품은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사용한 식품 중 정제, 캡슐, 과립형태를 제외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맞는 식품을 말함 (안 제3조제2호) ④ 영업의 종류에 기능성식품을 소비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1회 섭취량으로 소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성식품소분업을 신설함 (안 제4조제1항제2호) ⑤ 제품의 연구·개발에 따른 개별인정형 기능성식품의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기능성식품과 기능성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 등을 개별 인정함에 있어 인정받는 자료를 나누어 제출하는 등 단계별 검토제를 도입함 (안 제18조) ⑥ 기능성식품을 인정받은 자가 해당 식품과 원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고시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경우와 수출국 및 제조사가 같은 수입 기능성식품 등을 3개 이상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가 고시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경우에는 개별 인정형 제품을 고시형 기능성식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 ⑦ 개별 인정을 받은 기능성식품과 기능성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하여 인정서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인정서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인정서를 받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 ⑧ 기능성식품 제조업은 우수기능성식품 제조기준을 적용하고 기능성표시식품 제조업에 대하여는 우수기능성식품 제조기준을 적용하되, 현재 대부분 식품위생법을 적용받는 업소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식품위생법 제48조에 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9조)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⑨ 개별인정형 제품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원, 우수기능성식품 제조기준 적용 업체의 우수한 기능성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기능성 식품안전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관계전문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동 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능성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향상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및 단체를 기능성식품 전문인력 양성 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0조)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능성식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능성식품에 대한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연구 개발된 기능성식품의 권리 확보 및 실용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1조)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능성식품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는 등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2조)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능성식품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능성식품의 연구·개발 동향, 생산 동향, 수출 동향 등에 대한 국내외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급하도록 함 (안 제43조) 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능성식품의 영업자에게 기능성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동 지원에 소요되는 장비, 인력, 비용 등 운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4조) ⑮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능성식품의 영업자에 대하여 연구·개발, 경영·재무·회계·품질향상 등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5조)	
환경노동 위원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경과로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이후 재계약 또는 계약의 갱신 등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좌우되고 있어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알리도록 하는 ‘해고예고제’를 두어 근로자가 해고에 대비하여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음 이에 사용자는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게 그 계약이 종료되는 날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재계약 또는 계약의 갱신 여부를 예고하여야 하도록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4조의2 신설)	2022-04-0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국토교통 위원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의원 등 11인)」 최근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붕괴 사고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는 시공사가 원가를 절감하고, 입주일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이 불러온 부실시공이 그 원인으로 파악되었음. 때문에 부실시공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후분양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주택 분양방식인 선·후분양에 대해 강제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건설사업주체는 국토부령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주택 분양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선분양 방식을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선분양 방식은 건설과정별로 발생하는 복잡한 도급구조와 이로 인한 부실 가능성, ‘분양 따로 하자보수 따로’라는 책임소재 불분명성, 분양가격과 실거래가격 사이의 시세차익 및 분양권 전매로 인한 부동산투기 유발과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 박탈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므로, 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후분양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후분양제 도입 시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건설사는 주택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시공능력 1조원 이상의 종합건설회사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9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후분양 방식을 의무화해 주택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주택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54조제9항 신설). 더불어 국공유지 우선 매각 대상자에 후분양 사업자를 포함시켜 민간부문에서 후분양 방식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안 제30조제1항제3호 신설)	2022-04-06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	아래【별첨1】참조		
국회사무처	4/15(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84호 발간	
	4/15(금)	「헌법과 법제」 제17호 발간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과 법제적 시사점	
국회도서관	4/12(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90호 발간 - 호주와 영국의 온라인 안전 입법 동향	
	4/14(목)	「현안, 외국에선?」 제33호 발간 - 미국의 국가전략 관련 최근 동향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전략 변화를 중심으로)	
예산정책처	4/13(수) 14:00	「2022년도 제1차 예산분석 분과회의」 개최 - 재정환경 변화를 고려한 예·결산 중점 분석사항	화상회의
	주중	「NABO Focus」 제43호 발간 - 주요국의 탄소가격제도 동향 및 시사점	
입법조사처	4/11(월)	「이슈와 논점」 제1935호 발간 - 음식배달산업 현황과 배달라이더의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쟁점	

[별첨1] 제395회 국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특별위	4/13(수) 10:00	전체회의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위 업무보고
기재위	4/12(화) 10:00	전체회의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이창용)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과방위	4/13(수) 14:00	전체회의	법안 심사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4/11(월) 15:00	(새 정부 출범)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진단과 입법방향	김웅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4/11(월) 15:00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국제포럼	윤미향, 서삼석, 이재정 의원실 외	의원회관 3세미나실
4/12(화) 10:00	디지털자산기본법, 중첩된 과제의 해결방안은	윤창현 의원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	의원회관 1세미나실
4/14(목) 10:00	메타버스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가 - 쌍둥이 세상 디지털 트윈이 온다	황보승희, 윤두현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4/14(목) 13:00	진짜 경제전문가 김경만의 중소기업UP! - 대전·세종·충남 지역 중소기업 간담회	김경만 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 충남지역본부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29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사무처	4/8(금)	「해의의회 포커스」 제83호 발간	
국회도서관	4/5(화)	현안입법 알리기 - 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T. 02-316-4630 |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212 |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T. 02-316-4432 |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487 |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파트너변호사 | T. 02-316-1773 |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소속변호사 | T. 02-316-2573 | E. jeroh@shinkim.com |
| • 서예지 소속변호사 | T. 02-316-1787 | E. yjiseo@shinkim.com |
| • 나인선 소속변호사 | T. 02-316-1795 | E. isna@shinkim.com |
| • 문응필 소속변호사 | T. 02-316-4047 | E. epmoon@shinkim.com |
| • 최유리 소속변호사 | T. 02-316-1748 | E. yrchoe@shinkim.com |
| • 성재열 소속변호사 | T. 02-316-1777 |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소속변호사 | T. 02-316-2596 | E. suhcho@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